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

2017. 1.

목 차

I.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3
II. 예상세액 계산하기	24
III.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39
IV. 간편제출하기	51

I.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계좌동의현황 한번에 인쇄하기 한번에 내려받기 공제신고서작성 예상세액계산 간소화자료 제출

연수증 발급기관 조회 의료비 신고 센터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보험료 (Insurance) 의료비 (Medical Expenses)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 직불카드 (Debit Card)

0 0 4,347,090 1,678,000 12,080,910 20,950 24,000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Pension Savings) 주택자금 (Housing Funds) 주택미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Long-term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avings)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기부금 (Donation)

1,716,486 2,400,000 3,136,626 640,000 7,700,000 1,800,000 2,000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 기본내역(연간기부금액공개항목) PDF다운로드 인쇄하기

기부자	사업자번호	단체명	유형	기부금합계 금액	공제대상 금액	기부장려금 산정금액
한...		티창고문	종교...	9,000	1,000	8,000
				인별합계 : 1,000 원		
어...		티창고문	종교...	9,000	1,000	8,000
				인별합계 : 1,000 원		
선택 : 2 건				선택합계 2,000 원		

기부금안내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기부금단체(종교단체, 복지시설 등)에 **국세청 자료제출 의무**를 확인하고 직접 기부금영수증 등 발급 받음

· 세액공제대상금액 : 거주자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나 이제한 없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금액에 포함)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 한도

기부금 종류	소득·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①정치 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100%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15% 3천만원 초과 : 5%

○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 선택합니다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 * 공제신고서 작성 화면에서는 간소화자료 출력 /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가 필요한 경우 현재 화면에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3. 근무처 선택 및 입력

근무처 선택 및 추가입력 ✕

※ 근무처와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나, 맞벌이 절세안내를 이용하실려면 총급여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등록된 기초자료는 수정 또는 삭제 불가능하니, 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현)근무지 (단위 : 원) **추가** 선택내용 삭제

선택	근무처 사업자번호	상호	총급여	비고	연금보험료합계금액
<input type="radio"/>	■■■■■	광민우감역삼초	42,000,000	간편대출(지급명..	6,300,000
<input type="radio"/>	■■■■■	너나상남대남파(무)	46,669,090	간편대출(지급명..	0
<input type="radio"/>			0	신규추가된 자료	0

· 종(전)근무지 자료 **추가** 선택내용 삭제

선택	근무처 사업자번호	상호	총급여	결정세액	연금보험료합계금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닫기 반영하기

- 공제신고서를 처음 작성하는 경우 「근무처 선택 및 추가입력」 팝업창이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이후부터는 Step1.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 회사에서 입력한 주(현)근무지 정보가 조회되며, 주(현)근무지를 선택하면 입력된 급여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근무지를 신규 입력하여 주(현)근무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편대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회사에서 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 정보를 입력한 경우 주(현)근무지 선택 시 하단에 종(전)근무지 자료가 조회되며, 그 외의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 근무처나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은 가능하나,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예상세액 계산하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기본사항 입력

HomeTax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도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화면 가기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간편제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안내 화면 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Step.01 기본사항 입력** Step.02 부양가족 입력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Step.0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회사로부터 공제신고서 제출을 요청 받은 근로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순서에 따라 작성한 후 출력 또는 PDF로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사업자등록번호와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는 총급여를 입력해야 이용 가능)
 -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에는 회사가 등록된 총급여액 등을 자동 반영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여부는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버튼을 클릭 가능하며, 회사가 총급여액 등 자료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반정하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총(전)근무지의 총급여액은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버튼을 눌러 입력 가능)

한름법 님 | 너나상남대남파(무)

공제신고서 초기화

기본사항 입력

기본사항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성명	한름법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근무처 명칭	너나상남대남파(무)
세대주 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세대주 <input type="radio"/> 세대원	국적	KR 대한민국 선택
근무기간	2016-01-01 ~ 2016-12-31	거주지국	KR 대한민국 선택
거주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거주자 <input type="radio"/> 비거주자	분납신청여부	<input type="radio"/> 신청 <input checked="" type="radio"/> 미신청 ※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시 신청가능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input type="radio"/> 120% <input checked="" type="radio"/> 100% <input type="radio"/> 80% ※ 선택가능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전년과 동일 <input type="radio"/> 변동
총급여	59,130,724 원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Step.01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는 근무기간, 세대주여부, 거주구분 등 근로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비율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120% 선택 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세액의 120%를 원천징수함
 - 분납신청여부 : 항목에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3회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 거주구분 : 비거주자를 선택하는 경우 본인 외의 부양가족과 연금보험료 외 소득·세액 공제명세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5. 부양가족 입력

HomeTax.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화면 가기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근로자 질서안내 간편제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안내화면 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Step.01 기본사항 입력 **Step.02 부양가족 입력**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Step.0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이 화면에서 제공되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부양가족 중 간소화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명단입니다.
· 명단에 있는 부양가족 외에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또는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눌러 개별적으로 추가하고,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한름범님 너나상남대남파(우)

부양가족 입력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끝치기

부양가족(인적)공제 명세 부양가족 추가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선택삭제

관계	내외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본공제	부녀자	한부모	경로우대	장애인	출생입양	6세이하
소속자 본인	내국인	한름범	■■■■■■■■■■	Y	N	N	N	N	N	N
소속자의 직계존속	내국인	광광형	■■■■■■■■■■	Y	N	N	Y	N	N	N
배우자	내국인	어인영	■■■■■■■■■■	Y	N	N	N	N	N	N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내국인	한어하	■■■■■■■■■■	Y	N	N	N	N	N	N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내국인	한왕가	■■■■■■■■■■	N	N	N	N	N	N	N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Y'로 선택하시고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Step.02 부양가족 입력 화면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근로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 명단이 조회됩니다.
 - 관계는 간소화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에 입력된 관계이며, 간소화에 입력된 정보가 다른 경우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부양가족을 추가 입력할 수 있으며,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선택하면 전년도 연말정산 시 제출한 부양가족이 추가됩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과의 관계,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 본인 외 부양가족의 공제여부는 모두 ‘N’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Y’로 선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6. 소득·세액공제 명세 입력 화면

한동범님 | 너나상남대남파(무) 공제신고서 초기화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소득공제 명세 (단위: 원)

공제항목명		①간소화자료 (국세청자료)	②기타 자료 (직접수집자료)	합계(① + ②)
<input type="checkbox"/> 연금보험료공제	田 수정	0	100,000	100,000
- 국민연금보험료		0	100,000	100,000
- 국민연금보험료외 공적연금보험료		0	0	0
<input type="checkbox"/> 특별소득공제		2,899,983	1,126,436	4,026,419
- 국민건강보험	田 수정	0	100,000	100,000
- 고등보험		0	100,000	100,000
<input type="checkbox"/>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田 수정	2,218,043	26,436	2,244,479
- 대출기관		2,218,043	26,436	2,244,479
- 거주자		0	0	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田 수정	681,940	900,000	1,581,940
개인연금저축	田 수정	2,400,000	100,000	2,500,000
주택마련저축	田 수정	640,000	100,000	740,000
신용카드	田 수정	1,761,436	1,600,000	3,361,436
장기종합투자증권저축	田 수정	5,800,000	100,000	5,900,000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소득공제(기타)		1,700,000	900,000	2,600,000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田 수정	1,700,000	100,000	1,800,000
- 투자조합출자 등	田 수정	0	600,000	600,000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田 수정	0	100,000	100,000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田 수정	0	100,000	100,000

세액감면·공제 명세 (단위: 원)

공제항목명		①간소화자료 (국세청자료)	②기타 자료 (직접수집자료)	합계(① + ②)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	田 수정	0	400,000	400,000
- 과학기술인공제		0	0	0
- 퇴직연금		0	200,000	200,000
- 연금저축		0	200,000	200,000
<input type="checkbox"/> 특별세액공제		9,804,710	1,500,000	11,304,710
<input type="checkbox"/> 보험료	田 수정	813,080	200,000	1,013,080
- 보장성		813,080	100,000	913,080
- 장애인전용보장성		0	100,000	100,000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田 수정	1,378,000	200,000	1,578,000
-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난임시술비		1,378,000	100,000	1,478,000
- 그 밖의 공제 대상자		0	100,000	100,000
<input type="checkbox"/> 교육비	田 수정	7,611,630	100,000	7,711,630
- 소득자 본인		1,810,590	0	1,810,590
- 위탁전 아동(0명)		0	0	0
- 초,중,고등학교(3명)		5,801,040	0	5,801,040
- 대학생(대학원 불포함)(0명)		0	0	0
- 장애인(1명)		0	100,000	100,000

기부금	수정	2,000	1,000,000	1,002,000
- 정치자금기부금		0	0	0
- 법정기부금		0	1,000,000	1,000,000
- 우리사추기부금		0	0	0
- 지정기부금 종교외		2,000	0	2,000
- 지정기부금 종교		0	0	0
철세액	수정	0	5,000,000	5,000,000
주택차입금	수정	0	563,635	563,635
세액감면	수정			
외국납부세액	수정	0	3,563	3,563

- 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는 ①간소화 자료(국세청 자료)에 반영됩니다.
- 추가 수집한 자료는 각 항목별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명세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자료는 ②기타자료(직접 수집자료)에 반영됩니다.

7. 각 공제항목별 내역 확인 및 추가수집자료 입력

■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건강, 고용)

연금보험료공제 ✕

간소화 자료 납입금액 : 0 원 (단위 : 원)

항목	간소화(국세청)자료		회사(근로자)제출자료		추가납입금액	공제대상요건
	납입금액	차감액	주(현) 근로자	종(전) 근로자		
국민연금	0	0	0	0	100,000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은 제외)로 전액공제
공무원연금	-	-	0	0	0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군인연금	-	-	0	0	0	군인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	0	0	0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별정우체국연금	-	-	0	0	0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또는 부담금)으로 전액공제

*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회사가 등록한 연금보험료가 자동 반영되며,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는 간소화에서 선택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동 반영됩니다. (간소화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도 회사 등록 자료를 우선 적용)
 *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연금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한 연금보험료(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지역가입자·후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 금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

닫기 반영하기

보험료 ✕

간소화 자료 금액 : 0 원 (단위 : 원)

항목	간소화(국세청)자료		회사(근로자)제출자료		추가납입금액	공제대상요건
	납입금액	차감액	주(현) 근로자	종(전) 근로자		
건강보험료	0	0	0	0	100,000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	-	0	0	100,000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 공제)

*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회사가 등록한 건강보험료가 자동 반영되며,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는 간소화에서 선택한 건강보험료가 자동 반영됩니다. (간소화자료를 선택한 경우에도 회사 등록 자료를 우선 적용)
 *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부한 건강보험료(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납입금액에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2

닫기 반영하기

- 연금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를 간소화시스템에서 선택한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등록한 금액이 우선적으로 반영됩니다.
- 추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금액'에 입력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X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차입구분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차감	기타	상환액 합계
대출기관	2,454,686	236,643	26,436	2,244,479
거주자	0	0	0	0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총급여 5천만원 이하만 공제 가능)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차 계약 내용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대주(貸主)	주민등록번호	금전소비대차 계약 개시일	금전소비대차 계약 종료일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계	운
[...]	[...]	확인	[...]	[...]	0	[...]

2) 임대차 계약내용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임대인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택 유형	주택계약 면적 (㎡)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물건지)	계약서 계약기
[...]	[...]	확인	단독주택	[...]	[...]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 항목에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과 임대차 계약내용을 직접 입력해야 하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이 상단의 거주자 항목에 반영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X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가능) 가 공제 대상입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세대주 여부, 국민주택규모, 2주택 보유 여부 등 소득공제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 이므로 하단의 공제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공제 받으신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관련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차입시기	상환기간 방법	한도	국세청자료	국세청자료 차감	기타자료	합계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600만원	0	0	100,000	100,000
	15년~29년	1,000만원	0	0	100,000	100,000
	30년 이상	1,500만원	0	0	100,000	100,000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500만원	372,585	0	100,000	472,585
	15년 이상 기타	500만원	0	0	100,000	100,000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1,800만원	0	0	100,000	100,000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500만원	309,355	0	100,000	409,355
	15년 이상 기타	500만원	0	0	100,000	100,000
	10년 ~ 15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300만원	0	0	100,000	100,000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이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하단의 자료를 참고하여 상환기간 등 공제 요건을 검토한 후 기타자료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에서 제출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급기관	대출종류	차입금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상환 차입금	당해년원금 상환액	최초 차입일	최종상환 예정일	상환기간	주택
생물초양 판...	해당없음	40,000...	0	40,000...	690,000	2015-09-02	2030-09-02	15년	201
(역) 대판...	해당없음	22,000...	0	22,000...	21,161...	2012-08-06	2042-08-06	30년	201

※이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합계액과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연장, 전환) 관련내용 펼치기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 항목에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하단에는 간소화에 수록되어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자료가 조회됩니다.
 - 간소화자료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며, 차입기간이 10년 미만 등의 사유로 자동 반영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공제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공제대상인 경우 기타자료에 입력합니다.

■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개인연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요건)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공제한도 : 72만원)
 ※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납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선택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2,400,000	0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선택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100,000	100,000

※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선택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가입일자	납입금액	차감금액
<input type="checkbox"/>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2007-07-18	240,000	0
<input type="checkbox"/>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			2009-06-01	400,000	0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선택	주택마련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가입일자	납입금액
<input type="checkbox"/>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		100,000	2016-12-31	100,000

※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의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X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사용자	자료구분	기간구분	소계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선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사용액
한돌범	국세청자료	상반기	519,443	0	0	519,443	0	0
한돌범	국세청자료	하반기	173,800	0	0	173,800	0	0
머안명	국세청자료	연간	1,040,103	0	24,000	995,153	0	20,950
한왕가	국세청자료	연간	28,090	0	0	28,090	0	0
한돌범	기타자료	상반기	400,000	100,000	100,000	0	100,000	100,000
한돌범	기타자료	하반기	400,000	100,000	100,000	0	100,000	100,000
광광형	기타자료	연간	400,000	100,000	100,000	0	100,000	100,000
한머하	기타자료	연간	400,000	100,000	100,000	0	100,000	100,000
합계			3,361,436	400,000	424,000	1,716,486	400,000	420,950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사용금액과 다른 경우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기타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법인 비용,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월세액 공제대상인 월세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있는 경우 자료 추가를 선택한 후 차감할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차감할 금액을 -1,000,000 형식으로 입력)

구분	과세기간	사용금액	증감금액	합계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2014 년	0	100,000	100,000
	2015 년	0	100,000	100,000
본인의 추가공제를 사용분	2014 년	0	100,000	100,000
	2016 년 상반기	519,443	300,000	819,443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를 차감할 경우 ‘자료 추가’를 클릭하고 ‘-’ 값을 입력합니다.
- * 증가액의 경우 증가한 금액을 입력
-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추가 입력한 경우 하단의 추가 공제를 사용분 계산을 위한 사용금액에 자동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 등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간소화에서 해당 카드사의 자료를 선택해제하고 자료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기타자료로 입력합니다.

-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본인의 '14년과 '15년 사용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하단의 각 해당 항목에서 사용액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간소화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였더라도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자료에 반영하지 않음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X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선택	취급기관명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input type="checkbox"/>	██████████	██████████	3,000,000	500,000
<input type="checkbox"/>	██████████	██████████	3,000,000	700,000
<input type="checkbox"/>	██████████	██████████	700,000	200,000
<input type="checkbox"/>	██████████	██████████	1,000,000	500,000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원)

선택	취급기관명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input type="checkbox"/>	██████████	██████████	100,000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연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요약설명	-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2016년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하지 시 퇴직소득세 과세 (단, 2015.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도 2015년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	
- 공제 금액 (단위 : 원)		
	납입금액	차감금액
국세청자료	1,800,000	100,000
기타자료	100,000	0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에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연금계좌

연금계좌
X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계좌

-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원)

선택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원)

선택	퇴직연금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00,000	
<input type="checkbox"/>	퇴직연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00,000	

※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연금저축계좌

-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원)

선택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 기타 자료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원)

선택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등 명칭	계좌번호(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차감금액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연금저축			100,000	
<input type="checkbox"/>	연금저축-연금저축			100,000	

※ 작성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 보험료

보험료
×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보험료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기타 자료에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는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납입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에서 선택한 보험료 자료 중 주피보험자와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 보험료 내역에 반영됩니다.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주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지만 종피보험자 중 1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보험료내역에 반영되지 않으니 '자료추가'를 눌러 보험료 내역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내역**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 : 원)

☐	피보험자	자료구분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국세청자료 차감
<input type="checkbox"/>	미안명	국세청자료	50,000	0	0
<input type="checkbox"/>	미안명	국세청자료	144,000	0	100,000
<input type="checkbox"/>	미안명	국세청자료	398,400	0	100,000
<input type="checkbox"/>	미안명	국세청자료	520,680	0	100,000
<input type="checkbox"/>	한돌법	기타자료	100,000	0	0
<input type="checkbox"/>	한돌법	기타자료	0	100,000	0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의료비

의료비
X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시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를 통해 **신고(1.15.~1.17)**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경우 1.20.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1월20일 이후에도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수집하여** 기타 자료에 입력하고 증빙서류는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의료비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 ·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은 국세청자료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 자료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난임시술비를 국세청차감액에 입력하여 차감한 후 기타자료에 입력하시고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비가 근로자 본인 등(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없음)에 속하는 경우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자료 선택내용 삭제 (단위: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의료증빙코드	공제종류	상호	건수	안경구입금액여부	지출액	국세청차감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돌법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본인 등	교훈준행하...	1	Y	600,000	100,000
<input type="checkbox"/>	한돌법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본인 등	차주	1	N	1,078,000	0

※ 안경구입비는 인별 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료 자료 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의료증빙코드	공제종류	지급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건수	안경구입금액여부	지출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돌법	선택	본인 등	<input type="text"/>	확인	1	N	<input type="text"/>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지출액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에 ‘자료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과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 차감액’에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세청자료에서 차감한 후 기타 자료에 공제종류를 난임시술비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 난임시술비가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공제 한도 없음)에 속하는 경우는 구분 실익이 없으므로 별도 구분하지 않아도 됨(사생활 보호등 사유로 난임시술비를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지 않음)
- 간소화자료에 50만원을 초과하는 안경 구입비가 있을 경우 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감액해야 합니다.

■ 교육비

교육비
✕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교육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추가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는 회사로 제출 바랍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교육비 지출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 등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원)

	피교육자	자료구분	공제종류	공납금	공납금 차감액	교복구입비	교복구입비 차감액
<input type="checkbox"/>	한들범	국세청 자료	소득자본인	1,910,590	100,000	0	0
<input type="checkbox"/>	머만명	국세청 자료	초 중 고등학교	2,619,840	100,000	0	0
<input type="checkbox"/>	한어하	국세청 자료	초 중 고등학교	507,230	100,000	1,230,000	800,000
<input type="checkbox"/>	한왕가	국세청 자료	초 중 고등학교	2,543,970	100,000	0	0
<input type="checkbox"/>	---선택---	기타 자료	---선택---	0	0	0	0

※ 교복구입비(체육복 포함)는 중 고등학생에 한해 인별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교복구입비를 포함하여 교육비 한도를 계산합니다.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공납금 차감액' 또는 '교복구입비 차감액'에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에서 50만원을 초과하는 교복 구입비가 넘어 온 경우 반드시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액해야 합니다.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기부금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기부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추가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는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간소화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기부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액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연도 기부 명세
자료추가
선택내용 삭제
(단위:원)

☐	자료구분	기부코드	기부내용	기부자	기부처		상호(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료	법정기부금	금전	한왕가	■■■■■■■■■■	<input type="checkbox"/>	한너눈어눈상
<input type="checkbox"/>	국세청 자료	종교단체 외 지	금전	한돌범	■■■■■■■■■■	<input type="checkbox"/>	티참고문
<input type="checkbox"/>	국세청 자료	종교단체 외 지	금전	머안명	■■■■■■■■■■	<input type="checkbox"/>	티참고문
<input type="checkbox"/>	기타 자료	---선택---	금전	---선택---		<input type="checkbox"/>	

· 기부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단위:원)

기부종류	기부자 구분						
	합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외
합계	1,002,000	1,000	1,000	1,000,000	0	0	0
법정기부금	1,000,000	0	0	1,000,000	0	0	0
종교단체 외지...	2,000	1,000	1,000	0	0	0	0

· 기부금 조정 명세
이월분 입력
선택내용 삭제
(단위:원)

☐	기부금 코드	기부연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
<input type="checkbox"/>	법정기부금	2016	1,000,000	0	1,000,000
<input type="checkbox"/>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	2016	2,000	0	2,000
<input type="checkbox"/>	---선택---		0	0	0

닫기
반영하기

- 간소화자료는 자료구분을 ‘국세청자료’로, 회사에서 등록한 회사 일괄 기부금 자료는 ‘회사 자료’로 미리 채워주며,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 기부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와 기부금 조정 명세는 자동 계산됩니다.
-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분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에 입력합니다.

8. 신고서 및 첨부서류 확인

≡ 조회/납금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편리한 연말정산

시작하면 가기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간편제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시작하면 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Step. 01
기본사항 입력

Step. 02
부양가족 입력

Step. 03
소득·세액 공제명세 입력

Step. 04
신고서 및 첨부서류 조회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의 각 공제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공제에서 입력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세액공제액을 계산하므로, 총급여액에 따라 최종 소득·세액공제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액공제액은 계산되지 않으며, 정확한 공제액은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작성완료'를 선택하시면 공제신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아너님 | 손침가할단공산본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공제신고서 출력

공제신고서 조회

공제 신고서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의료비 지급명세	기부금 명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	-----------------------	----------	--------	-----------------

인적사항

소득자 성명	자아너	주민등록번호	[REDACTED]
근무처 명칭	손침가할단공산본	사업자등록번호	[REDACTED]
세대주 여부	<input type="checkbox"/> 세대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대원	국적	대한민국(국적코드 : KR)
근무기간	2015.01.06 ~ 2015.12.31	감면기간	
거주구분	<input type="checkbox"/> 거주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거주자	거주지국	대한민국(거주지코드 : KR)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input type="checkbox"/> 120%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 <input type="checkbox"/> 80%	분납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신청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input type="checkbox"/> 전년과 동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동	※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 기본정보에서 입력된 총급여와 Step3. 소득·세액공제명세에서 수정·추가 입력한 지출금액을 확인합니다.
- 각 부속명세서를 클릭하여 부속명세서를 확인합니다.
- 지출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시 Step3으로 이동하여 지출금액을 수정합니다.
- 신고서 작성 완료 후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간편제출 이용 가능
- * 간편제출은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23 -

II. 예상세액 계산하기

1.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 공제신고서 작성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화면 가기 | 공제신고서 작성 |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간편제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안내화면 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Step.01 기본사항 입력 | Step.02 부양가족 입력 |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 **Step.0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의 각 공제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TEP1에서 입력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하므로 **총급여액이 변경될 경우 계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출액이 있더라도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를 출력하면 STEP1에서 입력한 총급여액으로 계산된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회사 제출용)시에는 공제액이 표기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최종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 공제신고서 출력 | **예상세액 계산하기** | 간편제출하기 | 설문조사 가기

▶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공제 신고서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의료비 지급명세	기부금 명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	----------------------	----------	--------	-----------------

● 인적사항

소득자 성명	주인등록번호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화면 상단의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 경로

(임시경로 : 1.18.~25.)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 로그인 → 예상세액 계산하기

(정상경로 : 1.26.~3.10.) 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 로그인 → (연말정산 아이콘) → 예상세액 계산하기

○ 간소화자료 선택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HomeTax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예상세액계산** > 간소화자료 제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제공동의현황 한번에 인쇄하기 한번에 내려받기 공제신고서작성 **예상세액계산** 간소화자료 제출

* 귀속년도 2016년 전채선택 선택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영수증 발급기관 조회 의료비 신고 센터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0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0	보험료 (Insurance) 4,347,090	의료비 (Medical Expenses) 1,678,000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12,080,910	신용카드 (Credit Card) 20,950	직불카드 (Debit Card) 24,000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1,716,486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Pension Savings) 2,400,000	주택자금 (Housing Funds) 3,136,626	주택미연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640,00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Long-term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avings) 7,700,000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1,800,000	기부금 (Donation) 2,000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 기본내역(연간기부금액증명서) PDF다운로드 인쇄하기

기부자 사업자번호	단체명	유형	기부금합계 금액	공제대상 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	티창고문	종교...	9,000	1,000	9,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어...	티창고문	종교...	9,000	1,000	9,000
선택: 2 건			인발합계: 1,000 원		
			선택합계 2,000 원		

기부금안내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기부금단체(종교단체, 복지시설 등)에 국세청 자료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기부금영수증 등 발급 받음

· 세액공제대상금액: 거주자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나 이제한 없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금액에 포함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대상 한도

기부금 종류	소득·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①정치 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100%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10%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간소화자료 조회) 화면에서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한 후 화면 상단의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 초기화면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이 근로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합니다.

이용안내 동영상 **이용안내 도움말**

이용 절차

필수 선행 절차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Step.01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0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유의 사항

이용방법 문의

서비스 이용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 126 5 1 · 연말정산 세법상담 : 126 5 2

-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또는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용합니다.
- Step.01 세액 계산하기 화면은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기초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공제대상금액을 변경하여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 Step.0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화면에서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3년간 변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Step.01 세액 계산하기

1) 근무처 선택

✕

- 복수의 근무처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주(현)근무처에서 이를 합산하여 정산하여야합니다.
 하나의 근무처를 선택하면 그 선택된 근무처의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3년간의 추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복수의 근무처 연말정산자료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귀속연도별 근무처를 선택하세요

(단위 : 원)

- 2014 귀속

선택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총급여	결정세액
<input checked="" type="radio"/>	██████████	██████████	경기도 오산시 운...	2014-01-01	2014-12-31	36,885,780	84,762

(단위 : 원)

- 2015 귀속

선택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총급여	결정세액
<input checked="" type="radio"/>	██████████	██████████	경기도 광명시 사...	2015-01-01	2015-12-31	17,028,340	0

(단위 : 원)

- 2016 귀속

선택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총급여	결정세액
<input type="radio"/>	██████████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	2016-01-01	2016-12-31	400,003,120	122,854,611
<input type="radio"/>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	2016-01-01	2016-12-31	35,994,940	0

적용하기
닫기

- '14~'16년도에 여러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현) 근무처를 선택하라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 선택란에서 주(현)근무처를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화면 보기 | 공제신고서 작성 |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근로자 질세안내 |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하기

안내화면 보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설문조사가기 | 세액 계산하기 | 3개월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 이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미리 채워드리지만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 입력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불러와서 반영할 수 있음)
 ·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및 각 항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올바른 수정하고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추가 수집한 자료를 반영하면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버튼은 모든 항목을 0으로 설정함)
 · 이 서비스에서 적용한 금액과 회사에서 작성한 지급명세서 금액이 다를 경우 결과가 달라집니다.
 ·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월기부금),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로 인한 세금공제 혜택이 표준세액공제액 130,000원보다 적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며, 해당항목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아사주조합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도 공제가능)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또는 간소화자료 가져오기 > 회사등록 기초자료반영 >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 공제항목수정 > 계산하기 > 3개월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보기

· 근로처 :

·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예상세액 계산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①

· 회사가 등락한 총급여 등 근로자 기초자료 반영 **회사제출자료반영하기** ②

· 급여 및 예상세액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③

※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 보이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직접입력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① 총급여 ② 근로소득금액

- ①공제신고서 불러오기 : 작성이 완료된 공제신고서를 반영합니다.
- ②회사제출자료반영하기 : 회사에서 제출한 총급여·기납부세액 등의 자료를 반영합니다.
- ③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 총급여와 소득세기납부세액은 회사에서 '근로자기초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미리 채워줍니다.
 · 소득세기납부세액은 매월 봉급에서 미리 낸 소득세로 지방소득세는 제외됩니다.

·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쳐기

· 기본사항 (단위 : 원)

총급여	<input type="text" value="110,000,000"/>	계산하기
근로소득공제(자동계산)	14,950,000	
근로소득금액(자동계산)	95,050,000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	<input type="text" value="200,000"/>	
농어촌특별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	0	

· 총급여액은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시 활용됨
 · 근로소득공제는 근무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하지 않고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유의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원하는 총급여액을 입력(①)한 후 ②'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소득세 기납부세액(③, 먼저 낸 세금)을 입력합니다.
- ④적용하기 : 최종적으로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적용이 됩니다.

3) 소득공제

- ① ~ ⑩ 소득공제 항목별로 수정을 하는 경우 클릭합니다.

소득공제

※ *를 클릭하면 그룹명 상세설명이 펼쳐지며, 공제항목명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도움말이 나타납니다. (단위: 원)

공제항목명	사용(납입) 금액	소득공제액 (㉠)	공제한도 (㉡)	한도리감액 (㉢-㉠)
안락공제	미수정 ①	1,500,000	-	-
- 기본공제	-	1,500,000	-	-
- 추가공제	-	0	-	-
연금보험료공제	미수정 ②	1,000,013	1,000,013	-
특별소득공제	미수정 ③	600,003	600,003	-
- 건강보험료 등	미수정 ③	600,003	600,003	-
주택자금	미수정 ④	0	0	-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대용기간	미수정 ④	0	0	-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이자상환액	미수정 ④	0	0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미수정 ④	0	0	-
- 기부금(이월분)	미수정 ⑤	0	0	-
개인연금저축	미수정 ⑥	0	0	720,000
주택마련저축	미수정 ⑦	0	0	-
신용카드	미수정 ⑧	0	0	3,000,000
그 밖의 소득공제	미수정 ⑧	0	0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담금	미수정 ⑨	0	0	3,000,000
- 동지조합출자 등	미수정 ⑨	0	0	189,626,529
- 유리사주조합출연금	미수정 ⑩	0	0	4,000,000
- 고용유지 지원금	미수정 ⑩	0	0	10,000,000
- 장기임대주택임대료	미수정 ⑩	0	0	2,400,000
소계	-	3,100,016	-	-

도움정보

도움말 한도액비교 그래프 급여 증감에 따른 공제 한도(문턱) 변화 보기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본인기본공제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연 150만원)
배우자공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연 150만원) ※ 사실혼은 제외됨에 유의
부양가족공제	거주자(배우자 포함)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별당 연 150만원)/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을 적용받음. 다만,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
직계존속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1956.12.31 이전 출생)/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 중첩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
직계비속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 이하(1996.1.1 이후 출생)가주자의 직계비속/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양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인병 또는 입양숙근 및 풀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1996.1.1 이후 출생) 또는 60세 이상(1956.12.31 이전 출생)인 사람/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제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만 18세 미만(1998.1.2 이후 출생)/직전 과제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제기간의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계산

② **한도액비교 그래프**

③ **급여 증감에 따른 공제 한도(문턱) 변화 보기**

항목	2015년 (㉠)	2016년 (㉡)	증감 (㉢-㉠)
총급여	17,028,340	400,003,120	382,974,780
근로소득공제	7,804,251	20,750,062	12,945,811
근로소득금액	9,224,089	373,253,058	370,028,969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740,000	500,000	-240,000
중고단체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1,844,817	75,850,611	74,005,794
중고단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322,408	37,925,305	37,002,897

※ 도움말정보(노란색 테두리 탭)

- i. 공제항목별 상세설명 : 선택한 항목의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입니다.
- ii. 한도액비교 그래프 :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제액(파란색)과 한도액(노란색)을 한 눈에 보이도록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 iii. 급여 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 보기 : 작년의 데이터와 현재 입력한 데이터를 비교하여 증감액을 보여 줍니다.

- 29 -

■ 인적공제 - '田수정' (①)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인적공제(기본 및 추가) 상세자료 입력

· 기본공제 도움말 → 기본공제설명 펼치기

거주자(배우자 포함)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을 적용받음. 다만,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

(단위: 원)

항목	금액
본인기본공제	1,500,000
배우자공제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	<input type="text" value="1"/> 명
부양가족공제 직계비속 자녀·입양자	<input type="text" value="2"/> 명
부양가족공제 직계비속 그외	<input type="text" value="1"/> 명
형제자매	<input type="text" value="1"/> 명
부양가족공제 수급자	<input type="text" value="1"/> 명
부양가족공제 위탁아동	<input type="text" value="1"/> 명

추가공제 추가공제설명 펼치기

항목	금액
경로우대공제(70세이상)	<input type="text" value="1"/> 명
장애인공제	<input type="text" value="1"/> 명
부녀자공제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한부모공제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①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 ②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 ③ 입력이 끝났으면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입력한 내용이 반영되면서 팝업창이 사라집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 '田수정' ②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연금보험료공제 상세자료 입력 ✕

연금보험료공제 도움말 →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펼치기

(단위 :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국민연금 보험료공제	<input type="text" value="2,000,000"/>	2,000,000
공무원연금 보험료공제	<input type="text" value="2,000,000"/>	2,000,000
군인연금 보험료공제	<input type="text" value="2,000,000"/>	2,000,000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보험료공제	<input type="text" value="2,000,000"/>	2,000,000
별정우체국연금 보험료공제	<input type="text" value="2,000,000"/>	2,000,000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건강보험료 등 - '田수정' ③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상세자료 입력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단위 :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조건
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	<input type="text" value="2,000,000"/>	2,000,000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전액 공제)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input type="text" value="1,000,000"/>	1,000,000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전액 공제)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田수정' ④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상세자료 입력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금)

도움말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단위: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input type="text" value="1,000,000"/>	400,000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거주자	<input type="text" value="500,000"/>	0

특별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단위: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2011년이전차입분	15년미만 (600만원한도)	<input type="text" value="1,000,000"/>	1,000,000	
	15~29년 (1,000만원한도)	<input type="text" value="1,000,000"/>	1,000,000	
	30년이상 (1,500만원한도)	<input type="text" value="1,000,000"/>	1,000,000	
2012년이후차입분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1,500만원한도)	<input type="text" value="1,697,295"/>	1,697,295	
	기타대출 (500만원한도)	<input type="text" value="1,000,000"/>	1,000,000	
2015년이후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1,800만원 한도)	<input type="text" value="1,000,000"/>	1,000,000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1,500만원 한도)	<input type="text" value="1,000,000"/>	1,000,000
	10년 ~ 15년	그밖의 대출 (500만원 한도)	<input type="text" value="1,000,000"/>	1,000,000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300만원 한도)	<input type="text" value="1,000,000"/>	1,000,000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개인연금저축 - '田수정' ⑤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그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공제) 상세자료 입력

그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공제) (단위: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input type="text" value="710,000"/>	284,000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 공제금액: 납입액 x 40% - 공제한도: 연 72만원 추가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주택마련저축 - '田수정' ⑥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그밖의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상세자료 입력

그밖의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단위: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청약저축 납입액	0	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2014년 이전가입분)	0	0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공제,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017년 납입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연 납입액 120만원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2015년 이후가입분)	0	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금융회사 등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됨(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무주택 확인서는 다음년도 2월말까지 제출가능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0	0	법률 제 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으로 한다. (월 납입액 15만원 한도)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 - '田수정' ⑦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그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등 사용액) 상세자료 입력

그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등 사용액) (단위: 원)

항목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전통시장-대중교통제외)	65,000,000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전통시장-대중교통제외)	45,000,000
@직불카드등 사용금액(전통시장-대중교통제외)	4,530,000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325,600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1,200,500
@2014년 본인 신용카드등 사용액	0
@2015년 본인 신용카드등 사용액	0
@2014년 본인의 추가공제를 사용액	0
@2016년 상반기 본인의 추가공제를 사용액	0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용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田수정' ⑧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그밖의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상세자료 입력

· 그밖의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단위: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납입액	<input type="text" value="0"/>	0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 공제금액: 납입액 전액 - 공제한도: 연 300만원 → 2016년 이후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투자조합출자 등 - '田수정' ⑨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그밖의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상세자료 입력

· 그밖의 소득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단위: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항목별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납입액	<input type="text" value="0"/>	0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 공제금액: 납입액 전액 - 공제한도: 연 300만원 → 2016년 이후 가입한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그 밖의 소득공제 상세자료 - '田수정' ⑩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그밖의 소득공제(투자조합출자등) 상세자료 입력

도움말 → 그밖의 소득공제(투자조합출자등)설명 펼치기

· 그밖의 소득공제(투자조합출자등) (단위: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투자조합출자공제 2014년	조합등투자금액(10%)	<input type="text" value="0"/>
	벤처투자금액(50%, 30%)	<input type="text" value="0"/>
투자조합출자공제 2015년	조합등투자금액(10%)	<input type="text" value="0"/>
	벤처투자금액(100%, 50%, 30%)	<input type="text" value="0"/>
투자조합출자공제 2016년	조합등투자금액(10%)	<input type="text" value="0"/>
	벤처투자금액(100%, 50%, 30%)	<input type="text" value="0"/>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4) 세액감면·공제

세액감면·공제 (단위 : 원)

공제항목명	사용(납입)금액	세액공제액 (①)	공제한도 (②)	한도미달액 (②-①)
세액감면	수정 ①	-	0	
근로소득		-	660,000	
자녀	수정 ②	-	0	
- 자녀		-	0	
- 6세이하		-	0	
- 출생입양		-	0	
연금계좌	수정 ③	0	1,000,000	
- 퇴직연금계좌		0	0	-
- 연금저축계좌		0	0	-
특별세액공제	18,593,500	2,227,500		
- 보장성보험료	수정 ④	0	270,000	
- 의료비	수정 ⑤	12,473,500	1,646,025	
- 교육비	수정 ⑥	6,000,000	581,475	
- 기부금	수정 ⑦	120,000	0	
- 표준세액공제		-	0	
납세조합공제	수정 ⑧	0	0	
주택차입금	수정 ⑨	0	0	
외국납부세액	수정 ⑩	0	0	
월세액	수정 ⑪	0	750,000	0
소계		-	2,887,500	-

웹 페이지의 메시지
 ! 계산되었습니다.

웹 페이지의 메시지
 ? 저장 하시겠습니까?

- ① ~ ⑪ 세액 감면·공제 항목을 수정하는 경우 클릭합니다.
- * 계산결과 상세보기 : 세액계산 결과와 항목별로 자세한 산출과정을 볼 수 있는 팝업창을 띄워줍니다.
- * 초기화 : 사용(납입)금액을 모두 초기화 합니다.

■ 세액감면 - '田수정' ①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세액공제 세액감면 상세자료 입력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 세액감면
*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참고하여 '감면대상금액'을 입력하면 '감면세액'이 자동계산됩니다. (단위 : 원)

항목	감면대상금액	감면세액
소득세법에 의한 감면	0	0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기술자 등 감면	50,001	7,72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100%	50,004
	50%	0
	70%	0
조세조약에 의한 감면	50,005	15,443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 '田수정' ②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자녀 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도움말 → 자녀 세액공제 설명 펼치기

· 자녀 세액공제

항목	공제인원	공제액
자녀(자동계산)	0 명	0 원
6세이하	0 명	0 원
출생입양	0 명	0 원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해당하는 공제인원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 '田수정' ③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연금계좌 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

연금계좌 세액공제 도움말 → 연금계좌 세액공제 설명 펼치기

(단위 : 원)

항목	공제대상금액	공제금액
과학기술인공제(납입액)	200,000	24,000
퇴직연금(납입액)	200,000	24,000
연금저축(납입액)	5,000,000	480,000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제대상 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 '田수정' ④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보험료 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

보험료 세액공제 도움말 → 보험료 세액공제 설명 펼치기

(단위 : 원)

항목	대상금액	공제금액
보장성 보험료(납입액)	3,000,000	120,000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납입액)	3,000,000	150,000

- 각 항목에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반영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田수정' ⑤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의료비 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도움말 → [의료비 세액공제 설명 펼치기](#) (단위: 원)

항목	금액
①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2,000,000
② 그 밖의 공제 대상자의료비 지출액	3,000,000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자동계산)	1,700,000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액(자동계산)	450,000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①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 ② '계산하기'를 누르면 공제대상금액과 세액이 자동계산됩니다.
- ③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 '田수정' ⑥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교육비 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도움말 → [교육비 세액공제 설명 펼치기](#) (단위: 원)

교육비 지출액(공제대상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입력)

공제종류	공납금	교육비구입
<input type="checkbox"/> 미취학아동 교육비	5,000,000	0
<input type="checkbox"/> 소득자본인	500,000	0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1,000,000	0
<input type="checkbox"/> 소득자본인	0	0

행추가 선택내용 삭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금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자동계산)	4,500,000
교육비 세액공제액(자동계산)	675,000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① 공제종류를 선택한 후 공납금, 교육비구입비를 입력합니다.
- 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공제 대상금액과 세액을 자동계산합니다.
- ③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반영됩니다.

* 추가로 입력이 필요한 경우 [행추가](초록색 테두리)를 누르면 입력할 수 있는 줄이 생성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田수정' ⑦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기부금 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도움말 →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기부금 세액공제 (단위: 원)

항목	금액			공제금액	
	회사자료	국세청자료	기타		
정치자금기부금 기부금액	0	0	200,000	105,909	
법정기부금	2013년 이전 이월분	0	200,000	(소득공제) 200,000	
	당해년도 기부금액	300,003	0	1,000,000	195,000
	2014년, 2015년 이월분	0	0	200,000	30,0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0	0	200,000	30,00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2013년 이전 이월분	0	200,000	(소득공제) 200,000	
	당해년도 기부금액	300,005	0	200,000	75,000
	2014년, 2015년 이월분	0	0	200,000	30,00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2013년 이전 이월분	0	200,000	(소득공제) 200,000	
	당해년도 기부금액	300,004	0	200,000	75,000
	2014년, 2015년 이월분	0	0	200,000	30,000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각 항목에 공제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 2013년 이전의 이월 기부금은 ('13년 이전분) 란에 입력합니다.

■ 기타세액공제 세액공제 - '田수정' ⑧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기타세액공제 상세자료 입력

도움말 →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치기

기타세액공제 (단위: 원)

항목	공제대상금액 등	공제세액
납세조합공제 공제세액	200,000	0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	200,000	0
외국납부	국외납부세액	0
	국외 총급여	200,000
월세액 지급액	200,000	0

초기화 적용하기 닫기

- 각 항목에 공제대상금액 등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3. Step.0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하여 추세를 살펴보는 화면입니다.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tax calculation.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buttons: '안내 화면 가기',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and '간편제출'. Below this is the '예상세액 계산하기' section with buttons for '안내 화면 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세액 계산하기', and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A notice states that the service compares the latest 2-year year-end settlement content with the calculated results. A menu below the notice lists various categories: '연말정산 요약', '인적공제', '신용카드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and '기부금'. The '연말정산 요약' category is selected and numbered 1. Below the menu, a summary for a specific individual is shown: '2015년 대비 총급여가 382,974,780원 증가하고, 소득공제는 9,330,220원 증가, 과세표준은 373,644,560원 증가, 세액공제 949,459원 증가하여 결정세액이 122,200,774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① 연말정산요약 : 3년간의 연도별 현황과 공제항목별 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② 인적공제 : 부양가족 공제액 등 인적공제 변동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③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공제한도, 공제금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④ 교육비 : 교육비 지출액과 공제대상금액,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⑤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과 공제대상금액,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⑥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⑦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과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⑧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납입액과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Ⅲ.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1.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로 이동하기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tax services. At the top, there's a section titled '편리한 연말정산' (Convenient Year-end Tax Settlement) with several buttons: '안내화면 가기' (Go to Guide Screen), '공제신고서 작성' (Create Deduction Statement), '예상세액 계산' (Calculate Estimated Tax),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Matched Couple Tax Savings Guide -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간편제출' (Simple Submission). Below this is the '예상세액 계산하기' (Calculate Estimated Tax) section with buttons for '안내화면 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Check Year-end Tax Settlement Simplification Materials), '세액 계산하기' (Calculate Tax Amount), and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View 3-Year Trend and Item-specific Notes). A notice box contains two bullet points: '이 서비스에서는 '예상세액 계산하기'의 계산 결과를 최근 2년간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한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 '주요 공제항목별로 '유의할 사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Below the notice are tabs for '연말정산 요약' (Year-end Tax Settlement Summary - selected), '인적공제' (Personal Deduction), '신용카드등' (Credit Cards, etc.),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의료비' (Medical Expenses), '주택자금' (Housing Funds), '연금저축' (Pension Savings), '보장성보험료' (Insurance Premiums), and '기부금' (Donations). The '연말정산 요약' section shows a summary: '■님은 2015년에 비해 출급여가 382,974,780원 증가하고, 소득공제는 9,330,220원 증가, 과세표준은 373,644,560원 증가, 세액공제 949,459원 증가하여 결정세액이 122,200,774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화면 상단의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버튼(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을 클릭하여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 경로

(임시경로 : 1.18.~25.)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 로그인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정상경로 : 1.26.~3.10.) 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 로그인 → (연말정산 아이콘)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편리한 연말정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3.0**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편리한 연말정산이 근로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합니다.

[국민 · 공공 · 초월 · 협력]

정부3.0
바로가기

이용안내 동영상

이용안내 도움말

이 서비스는 맞벌이 근로자가 각각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마쳐야 이용할 수 있고,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미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용 절차

필수 선행 절차			Step.01	Step.02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자료제공 동의하기	절세 안내 보기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와 직접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며,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수정 없이 반영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여야 맞벌이 근로자의 절세효과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을 동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당초 계산한 예상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예상결정세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을 안내해드립니다.

유의 사항

- 이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입력한 공제액 등을 기준으로 세액계산을 하므로, 총급여,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반드시 공제신고서에 기재하여야 정확한 절세 효과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가 불가합니다.**(다른 소득으로 인한 세율 구간 변동 등으로 세부담이 달라짐)
- 이 서비스 안내결과에 따라 절세를 위하여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를 추가로 하여야하고,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근로자는 공제신고서도 직접 수정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수정해 줄 수 없음)
-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항목이 세법상 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공제요건은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문의

서비스 이용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 ☎ 126 5 1 · 연말정산 세법상담 : ☎ 126 5 2

- Step.01 자료 제공 동의하기를 클릭하면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Step.02 절세 안내 보기를 클릭하면 [맞벌이 절세 안내보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유의사항

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총급여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근로자여야 합니다.
3. 세법상 공제요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항목별 공제요건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화면 가기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간편제출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안내 화면 가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설문조사가기
맞벌이 절세안내보기
맞벌이 자료제공동의
맞벌이 자료제공동의취소

맞벌이근로자 자료제공동의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공제신고서 내용이 모두 필요합니다. 따라서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려는 배우자에게 공제신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공 동의를 해도 본인의 출급여, 공제내역 등 공제신고서 내용을 배우자가 조회할 수 없으며, 공제신고서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출부담세액)과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별로 결정세액을 구한 후 그 차액만 안내합니다.

자료조회자(「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는 사람 - 배우자)

1
성명
주민등록번호
- -
2

자료제공자(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 본인)

성명
자기유
관계
배우자

본인(자기유님)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배우자(님)가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3

동의하기

제공동의 완료된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동의 신청일자	제공동의 상태
		2016/01/08	동의완료

- 맞벌이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로부터 배우자의 공제신고서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본인이 배우자에게 공제신고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만 배우자가 맞벌이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조회할 배우자(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의 성명(①), 주민등록번호(②)를 해당란에 입력합니다.
- 입력이 완료되면 ‘본인(○○○님)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배우자(△△△님)가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나 나타납니다.
- [동의하기](③)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완료되며, 배우자가 맞벌이 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절세안내 보기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화면 가기 | 공제신고서 작성 |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간편제출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안내 화면 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설문조사하기 | **맞벌이 절세안내보기** | 맞벌이 자료제공동의 | 맞벌이 자료제공동의취소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보기

- 부부가 각각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기준금액이며,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결정세액을 산출해 기준 금액과의 차액을 안내합니다.
(안내 예) -1,500원 : 기준금액보다 1,500원 절감, +1,000원 : 기준금액보다 1,000원 증가한다는 의미임
- 부부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이 완료된 후에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작성한 공제신고서에 총급여, 4대 보험, 기납부세액 등이 빠짐없이 입력되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회사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절세안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명 ① 배우자주민등록번호 - ②

③ **조회하기**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배우자명(①)과 주민등록번호(②)를 입력합니다.
- '조회하기'를 누르면 다음단계로 넘어 갑니다.
-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가 배우자에게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화면 가기 | 공제신고서 작성 |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간편제출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안내 화면 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설문조사하기 | **맞벌이 절세안내보기** | 맞벌이 자료제공동의 | 맞벌이 자료제공동의취소

*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을 부부가 추가하는 경우의 수입이다.
부부가 모두 공제신고서가 완료된 후 배우자가 본인(자대초)에 대해 자료제공동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① 배우자명 배우자주민등록번호 -

② ※ 출요장(배우자)가 자대초(본인)에 대해 공제신고서 자료제공동의가 되어있습니다.

본인 ③ 공제신고서 완료

배우자 공제신고서 완료

④ **다음단계**

- ①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 ② 배우자의 자료 제공 동의 여부가 표시됩니다.
- ③ 본인과 배우자가 공제신고서 작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 있어야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④ ‘다음단계’를 클릭하고 넘어 갑니다.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안내 화면 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설문조사하기 | **맞벌이 절세안내보기** | 맞벌이 자료제공동의 | 맞벌이 자료제공동의취소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보기

- 부부가 각각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기준금액(음영으로 표시)이며,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결정세액을 산출해 기준 금액과의 차액을 안내합니다.
(안내 예) -1,500원 : 기준금액보다 1,500원 절감, +1,000원 : 기준금액보다 1,000원 증가한다는 의미임
- 부부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이 완료된 후에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작성한 공제신고서에 출급여, 4대 보험, 기납부세액 등이 빠짐없이 입력되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회사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절세안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본인과 배우자가 당초 선택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을 반영하여 비교하며, 부양가족을 공동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양가족 목록조회

	본인(참자준)	배우자	본인-결정세액 증감액	배우자-결정세액 증감액	합계

조회하기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조회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안내 화면 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설문조사하기 | 맞벌이 절세안내보기 | 맞벌이 자료제공동의 | 맞벌이 자료제공동의취소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보기

- 부부가 각각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기준금액(음영으로 표시)이며,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결정세액을 산출해 기준 금액과의 차액을 안내합니다.
(안내 예) -1,500원 : 기준금액보다 1,500원 절감, +1,000원 : 기준금액보다 1,000원 증가한다는 의미임
- 부부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이 완료된 후에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작성한 공제신고서에 출급여, 4대 보험, 기납부세액 등이 빠짐없이 입력되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회사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절세안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본인과 배우자가 당초 선택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을 반영하여 비교하며, 부양가족을 공동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양가족 목록조회 엑셀다운로드

	본인(참자준)	배우자	본인-결정세액 증감액	배우자-결정세액 증감액	합계
사례 1	출근법				
사례 2		출근법			

계산하기

- 부양가족을 부부가 각각 공제받는 경우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사례별로 결정세액의 증감액과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안내화면 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설문조사하기

맞벌이 절세안내보기 | 맞벌이 자료제공동의 | 맞벌이 자료제공동의취소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보기

- 부부가 각각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기준금액(음영으로 표시)이며,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결정세액을 산출해 기준 금액과의 차액을 안내합니다.
(안내 예) -1,500원 : 기준금액보다 1,500원 절감, +1,000원 : 기준금액보다 1,000원 증가한다는 의미임
- 부부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이 완료된 후에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동의를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작성한 공제신고서에 출급여, 4대 보험, 기납부세액 등이 빠짐없이 입력되어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회사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절세안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본인과 배우자가 당초 선택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와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을 반영하여 비교하며, 부양가족을 공동부양하는 것으로 보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본인의 공제신고서 최종변경일자(2016/01/19) / 배우자의 공제신고서 최종변경일자(2016/01/19)

부양가족 목록조회 엑셀다운로드

	본인(창자분)	배우자	본인-결정세액 증감액	배우자-결정세액 증감액	합계
사례 1	출납범		0	0	0
사례 2		출납범	375,000	-375,000	0

- 각 사례별로 본인의 결정세액과 배우자의 결정세액의 변동현황이 표시되고 변동된 세액의 합계를 보여줍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결정세액이 0으로 표시되고, 사례별로 세액이 증감된 금액을 보여줍니다. (+ 는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 는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 조회된 계산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4.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취소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맞벌이근로자 자료제공동의취소

· 배우자에게 한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는 화면입니다.

자료조회자(「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는 사람 - 배우자)

① ②

자료제공자(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 본인)

<input style="border: 2px solid blue;" type="text" value="성명"/>	관계	<input type="text" value="배우자"/>
---	----	----------------------------------

본인(님)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배우자(님)에게 한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합니다.

③

제공동의 완료된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동의 신청일자	제공동의 상태
	*****	2017/01/16	동의완료

- * ‘동의 취소하기’는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본인의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없도록 자료조회자(배우자)의 성명(①), 주민등록번호(②)을 입력 합니다.
- 입력이 완료되면 “본인(○○○님)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배우자(△△△님)에게 한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표시됩니다.
- ‘동의 취소하기’(③)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상대방이 더 이상 자신의 자료를 조회 할 수 없게 됩니다.

IV.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하기

1. 간편제출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간편제출, 공제신고서 간편제출 등 2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간편제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 (공제신고서 간편제출) 공제신고서와 부속서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단,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PDF는 제출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만 간편제출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한 후 「간소화자료 제출」을 클릭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제공동의현황
한번에 인쇄하기
한번에 내려받기
공제신고서작성
예상세액계산
간소화자료 제출

귀속년도
2016년
전체선택
선택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영수증 발급기관 조회
의료비 신고 센터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보험료 (Insurance)	의료비 (Medical Expenses)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	직불카드 (Debit Card)
1,185,830	1,650,000	650,400	11,400	0	8,438,674	9,500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Pension Savings)	주택자금 (Housing Funds)	주택마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Long-term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avings)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기부금 (Donation)
0	4,020,000	0	0	0	0	0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 기본내역(연간기부금액공제항목) PDF다운로드 인쇄하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부자 사업자번호	단체명	유형	기부금합계 금액	공제대상 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선택: 0 건
선택합계 0 원

기부금안내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기부금단체(종교단체, 복지시설 등)에 국세청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기부금영수증 등 발급 받음

* 세액공제대상금액: 거주자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 소득인 경우 총금액 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 49 -

간편제출하기

- 공제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PDF)도 함께 제출됩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는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회수하여야만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며, 먼저 공제신고서를 회수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신고서가 최종 반영되며 이미 제출되었던 간소화 자료는 삭제됩니다.
- 간소화자료는 여러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며(최종분만 수록), 제출된 간소화자료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 회사(정수의무자)에서 확인완료(지급명세서제출)한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반송요청 후 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본사항

제출처(사업자번호)	오논치아코광TR남보하 (514- *****)		
제출일자	2017-01-10	제출상태	공제신고서제출
반송사유			

제출이력사항

번호	사업자번호	상호	처리일자	처리상태
1	514- *****	오논치아코광TR남보하	2017-01-10 14:47:31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2	514- *****	오논치아코광TR남보하	2017-01-10 14:41:08	공제신고서제출회수
3	514- *****	오논치아코광TR남보하	2016-11-18 11:02:43	공제신고서반송
4	514- *****	오논치아코광TR남보하	2016-11-16 15:47:16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5	514- *****	오논치아코광TR남보하	2016-11-16 14:06:33	공제신고서확인완료

자료제공동의

- 근로자 자신이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간소화증명자료 등)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 및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서비스에서 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및 제198조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 포함)에게 제출하는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제출

- 자료제공동의의 '☐ 동의함'에 체크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회사로 온라인(On-line) 제출됩니다.
- 2개 이상의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제출할 근무처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 회수없이 다시 제출이 가능하며, 최종 제출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제출 하였음을 알려야 합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회수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간편제출하기

- 공제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PDF)도 함께 제출됩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는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회수하여야만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며, 먼저 공제신고서를 회수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신고서가 최종 반영되며 이미 제출되었던 간소화 자료는 삭제됩니다.
- 간소화자료는 여러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며(최종분만 수록), 제출된 간소화자료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 회사(징수의무자)에서 확인완료(지급명세서제출)한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반송요청 후 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본사항

제출처(사업자번호)	오누리야코광TR남보하 (514- -*****)		
제출일자	2017-01-10	제출상태	공제신고서제출
반송사유			

▶ 제출이력사항

번호	사업자번호	상호	처리일자	처리상태
1	514- -*****	오누리야코광TR남보하	2017-01-10 14:47:31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2	514- -*****	오누리야코광TR남보하	2017-01-10 14:41:08	공제신고서제출회수
3	514- -*****	오누리야코광TR남보하	2016-11-18 11:02:43	공제신고서반송
4	514- -*****	오누리야코광TR남보하	2016-11-16 15:47:16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5	514- -*****	오누리야코광TR남보하	2016-11-16 14:06:33	공제신고서확인완료

회수

3. 공제신고서 간편제출 방법

① 편리한 연말정산 초기화면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시스템

서비스 이용시간
- 매일 08:00 ~ 24:00
* 1.25일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료일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3.10일
- 간편제출하기 : 3.10일
- 예상세액 계산하기 : 5.31일
- 맞벌이 절세 안내 : 3.10일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간편제출 (On-line 제출)
- 예상세액 계산하기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제출 유형별 이용안내 (회사가 요청한 내용에 따라서 아래 4개 유형 중 선택)

유형1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동영상보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출력

유형2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pdf파일로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동영상보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PDF 다운로드

유형3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 하는 경우 동영상보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간편제출 (On-line 제출)

유형4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작성한 후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함께 회사에 '온라인 제출' 하는 경우 동영상보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간편제출 (On-line 제출)

부가서비스

예상세액 계산하기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

아래 이용방법 중 선택

방법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부양가족 인적사항 등 상세자료 입력 필요) 동영상보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예상세액 계산하기

방법2 공제신고서 작성 후 계산 (부양가족 인적사항 등 상세자료 입력 필요) 동영상보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② ‘공제신고서 내용확인’ 탭을 클릭하여 작성된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후 화면 상단의 「간편제출」 버튼을 클릭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화면 가기 | 공제신고서 작성 | 예상세액 계산 | 맞벌이 근로자 월세안내 | 간편제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안내화면 가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Step.01 기본사항 입력 | Step.02 부양가족 입력 |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 **Step.0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의 각 공제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TEP1에서 입력한 출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하므로 **출급여액이 변경될 경우 계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제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출액이 있더라도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를 출력하면 STEP1에서 입력한 출급여액으로 계산된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회사 제출용)시에는 공제액이 표기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최종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서범도담 | 오윤치야코광TR남보하 514- |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 공제신고서 출력 | 예상세액 계산하기 | **간편제출하기** | 설문조사 가기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공제 신고서	면금액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의료비 지급명세	기부금 명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인적사항					
소득자 성명	서		주민등록번호	[REDACTED]	
근로처 명칭	[REDACTED]		사업자등록번호	[REDACTED]	
세대주 여부	[<input type="radio"/>] 세대주 [<input type="radio"/>] 세대원		국적	대한민국(국적코드 : KR)	
근무기간	2016.01.01 ~ 2016.12.31		감면기간		
거주구분	[<input type="radio"/>] 거주자 [<input type="radio"/>] 비거주자		거주지국	대한민국(거주지코드 : KR)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산형	[<input type="checkbox"/>] 120% [<input type="radio"/>] 100% [<input type="checkbox"/>] 80%		분납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radio"/>] 미신청	
민적공제 변동여부	[<input type="radio"/>] 전년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변동				

③ 자료제공동의의 ‘ 동의함’에 클릭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공제 신고서가 회사로 온라인(On-line) 제출됩니다.

간편제출하기

- 공제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PDF)도 함께 제출됩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는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취소하여야만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며, 먼저 공제신고서를 취소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신고서가 최종 반영되며 이미 제출되었던 간소화 자료는 삭제됩니다.
- 간소화자료는 여러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며(최종분만 수록), 제출된 간소화자료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회사(징수의무자)에서 확인완료(지급명세서제출)한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반송요청 후 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본사항

제출처(사업자번호)	제출일자	제출상태
[REDACTED]		공제신고서제출회수

제출이력사항

번호	사업자번호	상호	처리일자	처리상태
1	[REDACTED]	[REDACTED]	2017-01-10 14:41:08	공제신고서제출회수
2	[REDACTED]	[REDACTED]	2016-11-18 11:02:43	공제신고서반송
3	[REDACTED]	[REDACTED]	2016-11-16 15:47:16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4	[REDACTED]	[REDACTED]	2016-11-16 14:06:33	공제신고서확인완료
5	[REDACTED]	[REDACTED]	2016-11-16 10:57:21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자료제공동의

- 근로자 자신이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간소화명세서 등)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 및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해당 서비스에서 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및 제198조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 포함)에게 제출하는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제출

- ④ 회사에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수정하여 재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수 및 제출 이력’ 화면에서 공제신고서를 「회수」 한 후 수정하여 재제출합니다.
- 회사가 ‘확인완료’를 한 경우에는 회사가 ‘확인취소’를 하여야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한 경우 「회수」 없이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 할 수 있습니다.

간편제출하기

- 공제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PDF)도 함께 제출됩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는 공제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회수하여야만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며, 먼저 공제신고서를 회수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제신고서가 최종 반영되며 이미 제출되었던 간소화 자료는 삭제됩니다.
- 간소화자료는 여러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며(최종분만 수록), 제출된 간소화자료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 회사(징수의무자)에서 확인완료(지급영세서제출)한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반송요청 후 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본사항

제출처(사업자번호)			
제출일자	2017-01-10	제출상태	공제신고서제출
반송사유			

제출이력사항

번호	사업자번호	상호	처리일자	처리상태
1			2017-01-10 14:47:31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2			2017-01-10 14:41:08	공제신고서제출회수
3			2016-11-18 11:02:43	공제신고서반송
4			2016-11-16 15:47:16	공제신고서(간소화자료)제출
5			2016-11-16 14:06:33	공제신고서확인완료

회수